

##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 방향

환경부는 '96. 5. 7.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작성방향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이 계획은 지난 3. 21일 발표된 환경대통령 선언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세부시행계획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6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대통령 선언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환경의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정부 수범, 환경과 경제의 통합, 사전예방과 오염자 부담 등의 5대 원칙과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 환경기준의 선진화, 환경기초시설의 완비 등의 7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에서는 이 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5월말까지 수립하고, 환경부에서는 각 부처별 세부시행계획을 취합 정리한 후 6월중 총리실 주관 조정회의를 거쳐 전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생산과 소비를 녹색화, 자치단체의 환경관리역량 제고, 환경교육 및 실천의 강화, 환경기준의 선진화, 환경기초시설의 완비, 환경행정 관리기능의 강화, 환경외교의 강화 등의 "녹색환경나라건설실천계획"을 소개한다.

〈편집부〉

### I. 실천계획의 구조

남북한 환경협력과 전지구적 공동노력의 원칙

〈목표〉

〈7대 정책과제〉

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환경의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21세기 환경모범국가로 발돋움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 환경자치제의 확대, 환경교육의 강화, 환경기준의 선진화, 환경기초시설의 완비, 환경관리기능 강화 및 효율화, 환경외교의 강화

〈5대 기본원칙〉

〈실천계획〉

정부수범의 원칙, 환경과 경제의 통합 원칙, 공동책임과 생활 속의 실천 원칙, 사전예방과 오염자 부담의 원칙,

세부과제(22개), 단위사업(85개)

## I. 정책과제별 추진방향

### 1.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

#### □ 환경친화적 생산구조로의 전환

- 석유화학·철강·제지 등 에너지 다량소비 및 공해 유발 업종의 에너지 소비효율·자원재활용을 등 환경친화적 산업발전방향 설정(통산부)
-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취수원 주변의 영농지역에서는 농약의 안전사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농수산부)

#### □ 환경친화적 소비행태의 구축

- 감량화, 재사용, 재활용 등 3R을 국민생활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시군별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내무부, 환경부)
- 업소의 「좋은 식단」, 가정의 「알뜰 식단」짜기 등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식물 안 남기기」를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복지부, 환경부)
- 환경마크 부여대상을 재활용품 등 단순 소비재외에 가전제품 등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권장(환경부, 조달청)

※ 무분별한 환경용어의 표시나 광고를 규제하여 소비자의 혼란 예방(공정거래위원회)

### 2. 환경자치제의 확립

#### □ 자치단체의 환경관리 역량제고

-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기존인력을 활용한 「지역환경관리계획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자치단체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을 지원(환경부)
- '97년부터 자치단체 행정의 환경적합성을 평가(환경부)
- 환경관리가 우수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국고 보조금 등을 우선 지원
-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강화
-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에 민간으로부터의 환경기금

기탁을 활성화하여 민간환경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환경부)

- 「환경 옴브즈만」제도를 운영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제도개선 의견이나 정책건의를 수렴(환경부)
- 자연환경지도관,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하고, 「환경신문고」"128"을 활용하도록 홍보

### 3. 환경교육 및 실천강화

#### □ 학교환경교육의 강화

-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교과서의 환경보전관련 편성비율 확대(교육부)
- 시·도별로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을 확대하여 운영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환경교육담당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기반 조성(교육부)

#### □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 시민환경강좌(YMCA), 주부환경대학(배달환경) 등 민간단체의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환경부)
- 기존인력을 활용한 「지역별 환경교육센터」를 지방환경청에 설치하여 현장견학시설 등을 안내하고 홍보책자 및 VTR 테이프 등 교육교재를 지원(환경부)

#### □ 녹색환경실천운동의 확산

- 사회봉사단체 및 종교단체 등의 활동에 녹색환경실천운동을 추가하도록 부탁(환경부)
- 「환경보전 국민생활수칙」('90.6.2.제정)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환경윤리강령」으로 전환(환경부)

### 4. 환경기준의 선진화

#### □ 선진환경질 확보를 위한 기준 강화

- 2000년까지 먹는물 기준항목 43개를 WHO 권고수준인 120개로 확대하는 등 대기환경기준, 수질환경기준 등 강화(환경부)
-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중심 규제방식에서 농도와 양을

함께 규제하는 총량 규제방식으로 전환(환경부)

□ 환경기술의 개발

○ 과학기술연구비중 환경부문 연구비를 점진적으로 확대(과기처, 농수산부, 통산부, 환경부)

○ 수도권 매립지에 국제수준의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조성(환경부)

□ 환경산업의 육성

= 세계환경시장은 3~4천억불 규모로 추정되며 환경산업을 국가기간산업 및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

○ 첨단환경산업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통산부, 환경부)

○ 종합적인 환경기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산업체에 국내외 시장정보를 신속히 제공(환경부)

## 5. 환경기초시설의 완비

□ 수질환경기초시설의 확충

○ 하수처리장 등 수질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처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재경원, 내무부, 환경부)

구분	단위	'95	2001	2005	비고
하수처리율	%	45	65	80	미국:73('86)
하수관거 보급율	"	61.6	71	80	

○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민간의 전문운영체제를 도입(환경부)

□ 상수도 관련시설의 확충 및 정비

○ 상수도를 확충하여 안전한 수도물을 충분히 공급(재경원, 내무부, 건교부, 농수산부, 환경부)

- 2개이상의 자치단체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를 권역별로 지속적으로 확충

-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의 먼지역에 '94~

2004년까지 농어촌특별세로 생활용수의 개발을 추진

- 농촌의 마을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간이상수도중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의 개량을 추진

- 단기간의 가뭄에도 지하수, 우물 등이 고갈되는 도서지역의 상습적인 급수난을 해소 추진

- 공단하류 등 원수의 수질이 나쁜 18개 정수장에 활성탄·오존처리 시설 등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

□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 발생된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재경원, 환경부)

- 2개 이상의 시·군이 향후 10년간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광역매립지를 전국 20개 권역에 설치

- 광역매립지 설치가 곤란한 시·군에는 단독매립지를, 농어촌지역에는 매립·소각·재활용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을 설치

- 매립지 확보난 해소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중·대형 소각시설 설치와 도서지역에 소형소각시설 설치

- 매립위주 처리에서 발생지역 단위로 소각·매립·재활용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처리하는 시설의 설치 방안 강구

도시형 = 소각+재활용+부대시설

농어촌형 = 소각+매립+재활용+부대시설

도시형 = 간이소각 + 재활용

- 유해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호남권 등 6개 권역에 공공처리장을 설치

-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위하여 재활용 비축·처리 시설을 설치

□ 환경투자재원 확보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물과 자동차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폐기물 예치금제도의 실효성 제고(환경부)

○ 지방양여금의 수질오염방지사업비의 비율을 조정(내무부)

○ 상·하수도 요금 및 쓰레기 수거료를 단계적으로 현

# 환경정책

실화(내무부, 환경부)

○부과금, 예치금 등 환경투자재원 조달체계의 전면 검토·조정 (환경부)

## 6. 환경관리기능의 강화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구현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환경부)

○환경친화적 정부경영을 도입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환경성 개념의 도입을 유도(환경부)

○그린GNP의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활동에 환경자원의 소모를 반영(환경부)

□ 정부의 환경관리기능 합리적 개편

○수량·수질관리를 조정·연계하는 물관리 체계의 합리적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물관계법령의 일제정비 추진(총리실)

○야생생물·천연기념물·산림과 국립공원 관리기능의 효율화(총무처, 내무부, 농수산부, 문체부, 환경부)

□ 환경분쟁의 조정기능 강화

○집단소송개념을 도입하고, 지역주민·차지단체, 국가간의 분쟁까지 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총무처)

□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개선 (총리실 및 관련 10개 부처)

## 7. 환경외교의 강화

□ '92 리우정상회의후 환경문제가 국제외교의 중심테마가 되고 있으며, '97 유엔환경특별총회에서 향후 환경협력방안을 논의예정

※ 미국의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신환경외교를 선

언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환경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에의 참여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산업에의 영향에 대처하면서, UNEP 등 UN기구와 협력을 강화하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외무부, 통산부)

○환경과 무역의 연계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환경정보수집을 위하여 주요공관의 환경외교활동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에 환경전문가를 파견(외무부, 통산부, 환경부)

□ 동북아 지역국가 등과의 환경협력

○중국·러시아·일본등과의 환경협력을 강화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황해오염조사 및 유류오염방지를 위한 공동협력 추진(외무부, 과기처)

○국제협력단(KOICA)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환경전문가 등의 초청교육을 확대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을 개발도상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지원토록 유도(재경원, 외무부)

□ 한반도 환경공동체의 추진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환경실태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고,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추진(통일원)

## Ⅲ. 향후 추진계획

○'96. 5. 7 : 녹색환경의 나라건설을 위한 실천계획 작성방향을 국무회의에 보고

○'96. 5. 31 : 주관부처별로 단위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

○'96. 6. 10 : 각 부처의 세부시행계획 취합정리(환경부)

○'96. 6. 14 : 관계부처 1차 조정회의(총리실 주관)

○'96. 6. 20 : 관계부처 2차 조정회의(총리실 주관)

○'96. 6월말 : 청와대 보고

○'96. 9. : 중간평가보고대회 개최